

구민의 작은 목소리에도

커 기울이는 금천구의회

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
2021. 12. 30(목)

제233회 금천구의회 임시회 심사안건

검 토 보 고 서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
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(의회사무국 소관)



의회운영위원회

(전문위원)

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
일부개정규칙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경위

가. 의안번호 : 제2176호

나. 제 출 자 : 운영회의원(대표발의), 김경완의원, 조운형의원, 강수정의원

다. 제출일자 : 2021. 12. 23.

라. 회부일자 : 2021. 12. 23.

2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일부분이 개정되어 이를 정비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정책지원관 항목을 신설함. (안 제4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입법예고 : 2021. 12. 23. ~ 12. 28.(의견 없음)

5. 검토의견

- 본 규칙안은 「지방자치법」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의 인용 조문과 법령의 위임된 내용을 조례에 신설하는 사항임.

< 정책지원관의 직무 >

-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
- 의회 의사운영·행정사무를 처리하는 사무직원이나, 위원회 차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위원의 역할과 구분

구분	정책지원 전문인력	전문위원
법적근거	▪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§41	▪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§68
업무	▪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지원	▪ 위원회 자치입법활동 지원
업무 예시	▪ 의원의 의안작성, 입법정책 검토 (의원발의안 초안 작성 등) ▪ 의원 시정질문에 필요한 자료 수집·분석·제공	▪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(조례안 등) 검토 보고서 작성 ▪ 위원회 차원의 정책자료 수집·조사·분석·연구

- 도입규모 : 의원정수의 1/2 범위 이내(법 §41 ①)

※ '22년 의원 정수의 1/4, '23년 의원 정수의 1/2 범위에서 연차적 도입(부칙 §6)

- 안 제4조에서는 정책지원관을 신설하고 사무를 조례 제정·개폐, 예산·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활동 및 의원의 의정자료수집·조사·분석 지원,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 등 의정활동 지원 내용을 신설하였음.

- 본 규칙안은 의회사무국에 새롭게 도입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무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규정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사항임.

붙임 : 관련 법령 1부.

관련 법령

지방자치법(이하 '법')

- (법 제41조) 의원 정수의 1/2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고, 지방공무원으로 포함

- 제41조(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)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.
②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며, 직급·직무 및 임용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(시행령 제36조)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·직무 규정

- 제36조(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)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책지원 전문인력(이하 "정책지원전문인력"이라 한다)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·조사·연구,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.
② 정책지원전문인력의 직무범위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제1항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.
③ 정책지원전문인력의 명칭은 정책지원관으로 한다.

- (기구정원규정 제15조)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배치·직급·공무원종류 규정

- 제15조(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등) ① ~④ (현행과 같음)
⑤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회사무기구(위원회를 포함한다)에 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.
1. 시·도의 경우: 6급 이하
2. 시·군·구의 경우: 7급 이하
⑥ 제5항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(이하 "일반임기제공무원"이라 한다)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.